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이봉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-81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9.

발 의 자 : 이봉수, 강희향, 김윤정,
김효식, 백남환, 서종수,
이학래, 유호렬, 전승학,
한일용, 허정행의원

(11명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, 풍수해·지진·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 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인식되고

있으나,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 근본대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고, 최근 잠실 롯데월드 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연속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이미 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바, 우리구에서도 홍대 인근 롯데씨네마 영화관 천장이 무너져 관객이 대피하는 등 많은 사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관내에 있는 호텔, 영화관, 공영주차장, 시장 등 공공 대형 건축물과 공공 다중집합장소 및 쓰레기 소각장, 발전소,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‘안전권’ 의무를 이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.

- 따라서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마포구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안전증진과 지진·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, 지속적인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25조의 2